

# 위탁판매계약서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갑”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대행(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범위)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4.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6.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7.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3조(업무협조) ① “갑”과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해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상황,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②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예탁결제원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준수의무) ① “을”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감독기관의 명령,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판매창구의 분리) “을”은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7조(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 ① “을”은 “갑”의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 등에 간섭하지 못하며, “을”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 증권 등의 매입을 “갑”에게 요구하거나 증권 등의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는 등 “갑”의 자산운용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을”, “을”의 계열회사(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물의 심사) ① “을”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투자광고를 할 경우에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편 제3장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규정” 제2-42조제1항 각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승인을 받기 전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수익률의 표시) “을”은 집합투자상품의 광고선전물에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에는 협회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수익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상 의무기재사항)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증권저축통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회사의 명칭
2.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문언
3.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 상품”임을 표시하는 문언

제11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 없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추가약정) ①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을”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첨부 1. 위탁판매대상 집합투자기구 개별계약서”와 같다. 다만, 위탁판매대상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대상 집합투자기구명칭 등을 기재한 별도의 개별계약서에 “갑”과 “을”이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위탁판매계약을 맺지 않으며 추가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탁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본 계약으로 갈음한다.

제13조(세부사항) ①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 및 환매절차, 장표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

③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4조(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법원) “갑”과 “을”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집합투자규약 등의 제공) ① “갑”은 관련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의 영업점에 비치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갑”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비밀유지 및 지적재산권) ① 법령의 규정이나 법원,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기타 사유로 강제되거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상대방 관련 자료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외부 또는 제 3 자에게 공개, 제공, 유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전항의 비밀유지 관련 제반 사항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의 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한 본 계약상 어떠한 내용도 광고, 방송, 판촉, 마케팅 기타 활동에 상대방의 이름,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 약어, 유사어 기타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 또는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④"갑"과"을"은 본 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위반한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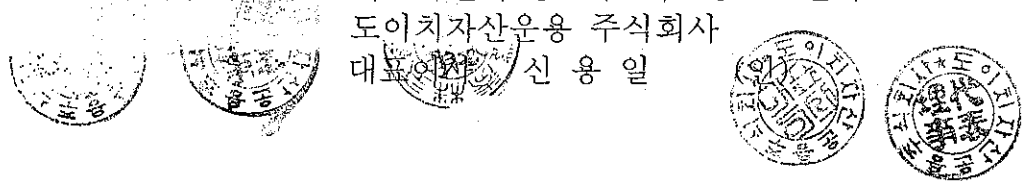
⑤"갑"과 "을"은 본계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해지 또는 해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 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 18 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9 조에 근거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환되는 간접투자기구 및 동법 시행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갑"과 "을"간 체결한 기존 위탁판매계약은 그 적용을 배제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년 4 월 15 일

집합투자업자 (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위탁판매회사(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키움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봉 수



\* 첨부1 : 위탁판매대상 집합투자기구 개별계약서 1부. 끝

<첨부 1>

## 위탁판매 대상 집합투자기구 개별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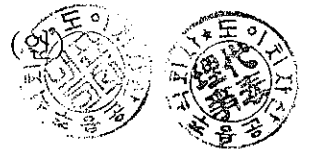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인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판매회사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9년 4월 15일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서 제1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집합투자기구 명칭	비고
도이치 DWS 프리미엄 브러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쌍방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집합투자업자 (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위탁판매회사(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키움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봉 수



## 세부업무 협약서

도이치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09년 4월 15일자로 체결된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 12조 및 제 13조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위탁판매에 따른 세부업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갑”과 “을”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서와의 관계) ① 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서에 정의된 용어는 세부업무 협약서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③ 계약서 및 세부업무협약서의 일부조항이 상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협약서가 우선한다.

제 3 조(대행표시) “을”의 위탁판매에 따른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광고선전물, 기타안내문 등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갑”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을 명시한다. 다만, “을”이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장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설정) ① “을”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 납입한다.

② “을”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을”은 일자, 명칭,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한국예탁결제원 집합투자기구 설정환매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동 시스템을 통해 “을”이 입력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설정의뢰 당일 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제 5 조(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해지) ① “을”이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

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을”의 환매요청에 응하고 “을”은 이를 환매 청구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본 조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갑”이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갑”이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④ “갑”이 “을”에게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갑”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금화하되,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현금화하도록 노력하며 “을”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⑤ 동일날짜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복수의 판매회사가 일부해지를 청구할 때 해지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 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해지청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지급 가능한 금액을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6 조(자금결제) ① “갑”과 “을”은 설정, 해지 등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정하는 지정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당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신탁업자를 통하여 설정, 해지, 환매 수수료, 집합투자기구보수 등과 관련된 자금을 결제한다.

③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등으로 신탁금 등을 납입함에 있어 당해 신탁업자의 해당 사무전담부서로 송금 처리한다.

④ “갑”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등으로 해지금(상환금 포함)등의 지급시 해당 신탁업자에 지시하여 “을”의 한국은행 당좌계좌 또는 상호합의된 “을”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하되, 상호 합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기준가격의 통지) ① “갑”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을 매일 영업시간 개시 이전까지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통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갑”은 지체없이 지연사유와 통보가능시간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정확한 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산정오류로 인하여 “을”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 가격 산정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 또는 “을”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갑”이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경우 “을”은 투자자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금 지급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산정오류로 인하여 “갑”이 “을”에게 거래의 일시중단, 정정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판매보수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등은 “을”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제 1 항의 판매보수등을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보수 인출일에 “을”에게 지급토록 운용지시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판매관련비용) ①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관련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판매관련비용은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기타 안내문, 통장 등의 인쇄비용 및 광고비용 등 영업에 직·간접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 10 조(자료제공)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1 조에 따라 투자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확인을 표기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합투자기구 관련 장부,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안내서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③ “갑”은 “을”의 요청시 “을”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방침, 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범위는 관계법령에 준한다.

④ “갑”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이나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그와 관련된 결산내역이나 상환내역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

⑤ “을”은 “갑”의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현황에 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 11 조(계약해지의 효과) 계약서 제 11 조에 따라 “갑”과 “을”간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이 본 계약해지일 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전부 해지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이 전액상환될 때까지 계약서 및 본 세부업무 협약서의 내용 중 당사자간 및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 12 조(전산자료 제공의 협조) “갑”은 “을”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집합투자기구가격정보, 집합투자기구명세내역, 집합투자기구 매매내역 등을 관련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이 요청한 양식과 전송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제 13 조(통보방법)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교환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번호로 팩시밀리(FAX), 이메일(e-mail) 등을 통해 통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14 조(집합투자재산의 건전성 확보) “갑”은 “을”이 위탁 판매한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기준 등을 “을”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을”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변경시에는 ‘을’에게 통보해야한다.

제 15 조(업무처리) 본 세부업무 협약서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각각 “갑”과 “을”을 대리하는 위탁판매관련부서장 또는 해당업무부서장 명의로 한다.

제 16 조(기타) ① “을”은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이나 “갑”에 관한 기타사항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며, 이에 따른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을”이 판매한 집합투자증

권의 운용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을”은 집합투자증권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③ 본 세부업무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안은 관계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제 17 조(협약서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15일

집합투자업자 (갑) :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대표이사 신 용 일



위탁판매회사(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키움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봉 수

